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12일(수),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 ① 따뜻한 옷 착용, ② 따뜻한 물 섭취, ③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재화 (044-202-8914)
			주무관	전재영 (044-202-8915)
			차 장	이원근 (044-202-8822)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의 62.6% 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건설업 분야



2024-건설안전실-669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동절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단부 · 개구부에서 떨어짐



안전난간 및 덮개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체결

토사 또는 거푸집 · 동바리 무너짐



굴착면 천막 덮기, 배수로 설치
흙막이 및 동바리 변형 확인

갈탄에 의한 중독 · 질식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용접 작업 중 화재



불티가 튀지 않도록 덮개 설치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한랭질환 예방 수칙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긴급 시 119 신고 (후송)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 작업자 참여



T.B.M.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작업중지

-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작업중지 및 대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붙임 4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개요

01.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

02.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충족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 발급

0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

-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제조업) 일반지원 및 특화지원*
* 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④선박건조및수리업
(기타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 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지원절차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사업장회원 회원가입 필요)
※ 공단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제조업 등: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 건설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
사업소개→건설안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컨설팅 신청→건설업 접수신청

붙임 5

안전일터 조성지원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건설업
산재예방 시설

지원대상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산재보험 가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순위 300위 초과 건설업체

<지원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24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 당해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지원금액

(신청기간) '24. 12. 31.(화)~재원 소진시 까지

지원금액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건설업
산재예방 시설

- 최대 3,000만원까지(소요비용의 70%)

- 최대 3,000만원까지(소요비용의 80%)

- 같은 사업주당 연간 총 9,000만원 이내(동일사업주 당 개소 제한없음)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고소작업대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건설은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 (문의: ☎ 1544-3088)

